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95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신동욱・박준태・조배숙

김도읍・주진우・구자근

박정하・김 건・김은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경품의 제공)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유치·홍보 등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점수, 경품, 게임"을 "점수, 게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경품제공"을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 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제3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품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수사항)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하다.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삭 제> 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 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 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 외한다) •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경품의 제공) ① 게임 <신 설> 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유 치・홍보 등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저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자는 제외한다.

- 1. ~ 6. (생략)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
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
<u>건</u>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u>큰 것</u>
② 제1항에 따른 경품의 지급
기준 및 제공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u>.</u>
<u>.</u>
1. ~ 6. (현행과 같음)
7
<u>점수, 게임</u>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8. ~ 11. (생략)
- ② (생략)
-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략)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u>경품제공</u>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 위
 - ② (생략)
-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 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 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u>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u> 품을 제공하는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 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 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 거나 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 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 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 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					
을 제공한 때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2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u>제1항제4호 및 제5호</u>에 해당한 때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u>제1항제4호 및 제5호</u>에 해당 한 때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5. <u>세1왕세4오구니 세0오까지</u> ==
③
<u>.</u>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u>

		(F)	(생	략)
(4)	•	$\langle \mathbf{O} \rangle$	(/)	4)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수사기관에 신고 또는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 1. (생략)
-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3. 4. (생략)
- ② (생 략)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

 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u>자</u>
- 2. · 3. (생략)
- ②・③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포상금) ①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
을 제공한 자
3.·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경
품을 제공한 자
2.•3. (현행과 같음)
4. 10. (23年 年〒/

② · ③ (현행과 같음)